
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 . 주요내용

-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 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).

II 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